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1월 2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2월17일) 상정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2월17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녹지공원과장 권진해)

□ 제안이유

○ 도시지역 녹지중의 하나인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하여 도시녹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로수 관리에 관한 관리청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정함(안 제4조)
- 간신,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점검 등 가로수 관리와 관리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가로수 관리청 간에 발생하는 문제협의 및 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 가로수 관리대장의 유지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내용 | 답변 내용 |
|--------------------------|--------------------------|
| <input type="radio"/> 없음 | <input type="radio"/> 없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 | |
|-------|-----------------------|
| 의안번호 | 제69호 |
| 의결연월일 | 2002.12.24 (제101회) |

제출년월일 : 2002.11.28.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도시지역 녹지중의 하나인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하여 도시녹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로수 관리에 관한 관리청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정함 (안 제4조)
- 개신,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점검 등 가로수 관리와 관리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가로수 관리청간에 발생하는 문제협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 가로수 관리대장의 유지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3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내 가로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가.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도로(고가도로와 지하도로는 제외한다)

나. 지방도, 시도, 구도 등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2. "관리청"이라 함은 산림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관의장을 말한다.

3. "갱신"이라 함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4. "보식"이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

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5.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벼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죽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청은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가로수 조성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부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부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식재 위치) ①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 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원 등 여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③중앙분리대 등 기타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①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식재간격은 6미터 ~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

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3.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이상 식재할 수 있다.
4.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②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③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④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인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차폐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3장 가로수 관리

제10조(갱신 및 보식) ①갱신 및 보식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 또는 보식하고자 할 때에는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1조(가지치기) ①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 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가로수 가지치기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병해충의 방제) ①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갱신·보식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⑥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 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지형과 토양 보호) ①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립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성토
 3.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토·성토
 4.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 ③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담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④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 ⑤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가로수 관리시설물) ①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 ②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시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제16조(점검) ①관리청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점검대상은 생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 ③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 ④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보식·생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 제17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 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②관리청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 ③모든 주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자·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 ④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자·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제3호 관련 별표 1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훼손자부담금) ①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훼손자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시 하자를 고려한 비용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9조 제3항의 별표 2와 같다.

1. 이식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2. 제거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가 및 제거비용
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당해 소요비용

제2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관리청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

③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 관리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관리청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관련자료의 유자·보고 등

제23조(가로수관리대장) ①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②가로수 관리대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리청별로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4조(보고) ① 관리청은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실적을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년도 1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천시조경관리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제 5조 관련)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균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별표 2】

| 훼손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제20조 관련) | |
|---|--|
| 훼손자 부담금 | <p>1. 별체, 수간절단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설계비 및 수목비 : 세외수입</p> <p>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20퍼센트+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이상 ※작업비 : 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p> <p>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수목비의 10퍼센트+작업비</p> |
| 원인자 부담금 | <p>4. 이식을 원하는 경우</p> <p>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도급공사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p> <p>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이식비 ※이식비 : 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p> <p>5. 제거하는 경우</p> <p>가. 원인자에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도급공사설계비 ※도급공사설계비 : 세외수입</p> <p>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제거비 : 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p> |
| <p>·도급공사설계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수목등 재료비포함)하여 산정</p> <p>·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정보,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p> <p>·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가능</p> <p>·예치금예치기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담보 기간동안 예치</p> <p>·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p> | |